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

2024. 8.

균형발전본부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1.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(균형발전정책과, '24. 7. 9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강북 등 저개발지역 사업은 수요 과소추정에 따른 낮은 편익, 높은 사업비로 경제성이 낮아 예타 통과가 어렵지만, 경제성 비중이 낮은 비수도권 지방은 지역낙후도 등 높은 정책성 반영 또는 예타 면제로 인한 수도권(서울)-비수도권간 역차별 발생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타제도의 핵심인 경제성 평가의 경우, 편익은 계량화가 용이한 항목만 인정하는 반면, 비용은 기회비용 개념에 예비비 등을 반영하여 낮은 사업성 평가 결과가 산출될 수 밖에 없음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① 종합평가 평가비중 조정 : 경제성(50~60%), 정책성(40~50%)으로 조정, ○ ② 경제성 부분 편익개선 : 신규편익(혼잡도 개선), 재평가 편익 (통행시간가치) ○ ③ 정책성 특수평가 내 평가항목 신설 : 지역개발 파급효과, 지역균형발전(가점) <p>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서울지역내 균형발전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건의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제50조 제2항 ○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24조, 제71조 제2항 	<p>(기획재정부)</p>